



손해배상 소송절차

1. 총설

가. 개요

산재사고의 경우 피재근로자는 치료종결후 장해급여금을 받은 후에도 사업주에게 산재사고에 관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할 수 있으며 “사업주(사용자)의 책임으로 산재사고를 당하였다.”는 과실 책임주의에 의거하여 사업주(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1) 사업주(사용자) 책임의 한계

- ① 법령상의 안전조치 미비
- ② 작업기계시설 등의 하자
- ③ 동료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사업주의 피용자이므로)

(2) 사업주(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인 관계로 순수한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재해도 산재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피재근로자가 사업주(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산재사고에 있어 사업주(사용자)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업주(사용자)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피재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 하기 위해 회사차량을 운행하다가 커브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길가 노선으로 추락 전도된 사고의 경우 순수한 운전

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근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처리는 할 수 있지만 차량의 전복사고에 대해 사업주(사용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나. 소송시 쟁점사항

피재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한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 소송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산재의 손해배상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정형적이고 일반적인 소송이므로 피재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하여 소송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1) 과실상계

산재사고를 당한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에서는 사고내용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과실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100% 보험처리를 해주게 되지만(무과실책임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근로자의 과실을 따져서 그 과실 비율만큼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를 하게 된다.

(2) 나이

산재보험은 피재근로자의 나이에 관계 없이 장해 급수별로 1급 1,474일분에서 14급 55일분까지 계산하여 지급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60세까지를 정년(자동연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40~50대의 근로자는 소송을 하는 경우 별다른 이익이 없을 수 있다.

(3) 장해의 정도

산재보험은 장해급수별 장해를 따져서 해당급수별로 계산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에 의한 장해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장해가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어느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4) 소득계산

산재보험에서는 사고발생 전의 평균급여로 계산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정부노임단가 임금을 적용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피재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5)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을 치료 종결하고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 익일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요양한 날 또는 휴업을 요하는 날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 해당일 익일부터 매일매일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다.(서울고법 81나3497)

다.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소송의 차이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장해 급수에 따라서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해당 장해에 따른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에 따라 장해비율(%)로 계산하게 된다. 즉 장해가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민사소송이 유리할 수도 있으며 특히 장해가 두 군데 이상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에서는 두 군데 이상의 장해 부위가 있더라도 가장 높은 장해급수에서 한 등급 올린 급수로만 결정하는데 비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장해발생 부위 전부의 장해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다발성 장해 발생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척추장해(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14급(55일분)이 적용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23% 영구장해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 예상판결금 산출방법

민사소송에서 판결금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다.

(1) 위자료

피재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정신적 보상으로 산재보험에서 보다는 민사소송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의 금액이 훨씬 많다.

계산식 : 5,000만원 × 장해비율

(2) 휴업손해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지급받고 있는 휴업급여금이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정부노임단가 직종별 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할 수 있다.

(3) 장해보상(상실수익액)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장해급수별 인정금액보다도 많다. 그리고 피재근로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장해보상은 60세까지 인정받게 됨으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4) 일실 퇴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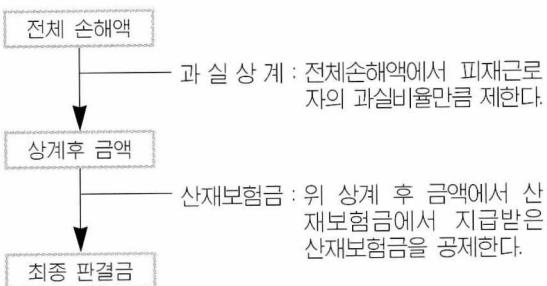
피재근로자가 월급생활을 했었던 경우 정년까

산재보상실무

지 근무하지 못하고 산재사고로 인하여 조기 퇴직함으로 발생하는 퇴직금 손해액

마. 소송시 판결금에서 산재보험금의 공제

민사소송에서는 장해 등으로 전체 손해액이 확정된 후에 그 확정된 손해액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해 지급된 보상금액만큼은 공제한 금액을 판결금으로 정하게 된다.



* 사고발생 후 장해 발생일(민사소송일)까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이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휴업보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확장청구를 할 때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신체감정일 이후부터의 일실수익금만 청구하는 것이 피재근로자에게 유리할 때도 있다.

2. 과실률·노동능력상실률 예

가. 과실비율

(1) 추락사고

피해자	사고경위	피해자과실	비율	사건번호
채탄원 남36세	자재운반기를 타고 광산 간도를 올라가던 중 운반기기에 연결된 강철밧줄이 끊어져 약 35mm지하로 추락	탑승이 금지된 자재 운반 기기에 2인이 탑승한 점	50%	92가합53052
배선공 남24세	지상 약 10m높이의 전주에서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원고가 밟은 벌판볼트 부분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지상으로 추락	안전허리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판볼트가 튼튼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30%	92가합53809
석공 남52세	원고가 대리석을 실은차 엘리카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순간 다른 작업자가 엘리카 조작을 잘못하여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	건물안에 있는 동료에게 대리석을 건네주는	없음	92가합50923
닥트공 남22세	카리프트를 이용하여 닥트를 운반하려고 동료와 닥트(길이 25cm, 무게 5kg)를 마주들고 뒷걸음질 치며 운반하다 카리프트와 벽 사이의 틈새(30cm)에 추락	작업용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카리프트 이용, 가벼운 것을 두 사람이 마주 들고 뒷걸음질 운반, 카리프트안의 공간이 충분함에도 부주의	70%	92가합77034

바. 소송의 손익

(1) 피재근로자에게 과실이 많은 경우

사고내용에서 기계에 몸이 빨려들어가는 사고 또는 프레스에 다친사고, 출음으로 인한 사고, 미끄러져 발생된 사고 등 피재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재사고의 경우는 전체 손해액에서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이 상당히 많이 상계되므로 민사소송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

(2) 사업주(사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이겨 놓고도 사업주(사용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 방법이 없게 된다. 산재보험에서 지급 받는 산재보험금을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민사소송은 사업주(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을 때는 그 지급 능력이 생길때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

(3) 피재근로자의 나이가 많은 경우

피재근로자의 나이가 50이 넘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는 대부분 별도로 청구할 손해배상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2) 프레스, 사출기 사고

피해자	사고경위	피해자과실	비율	사건번호
프레스공 남28세	프레스 작업중 제품 꺼내려고 손 넣는 순간 1.3m 옆에서 작업중이던 자가 제작된 물건 떨어뜨려 그것이 마치 Press기 클러치를 발로 밟은 듯이 클러치에 끼어 Press작동됨으로써 원손 25수지 절단	주위에 제품들이 많이 쌓였으므로 그것이 Press기계에 떨어지지 않는지 기계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	10%	87나4029
시출 건설공 남자18세	안전문을 열어놓은 채 성형작업을 하던 중, 우측 손으로 제품을 꺼내면서 좌측손으로 전원레버를 작동시켜 우측손이 금형 사이에 낀	안전문을 열어놓은 채 작업 감독자로부터 주의받고도 계속 그대로 작업	60%	92가합47866
사출기 보조공 24세	사출기 안전문을 열어 놓고 위로 손을 집어 놓아 제품찌꺼기를 꺼내 다 덜 열린 안전문에 몸이 달아 안전문이 닫히며 사출기가 작동되어 오른팔 압착 (보조공 경력 2일밖에 안된 미숙한 상태)	안전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그 곳에 몸을 기대고 위로 손을 집어 넣다가 안전문을 엽드려 닫히게 하여 사출기를 작동되게 한 과실	30%	88나33652

나. 노동능력상실율

(1) 정신, 신경

피해자	후 유 장 애				법원이 인정한비율 노동능력상실정도	사건번호
	내 용	산재등급	맥브라이드표 상실율	상실율		
콘크리트공 (해외취업)남42세	감전사고에 의한 뇌진탕으로 두통, 현기증, 경부동통 및 경직성운동제한	12급 12호	42%	45%	88.12.15선고 87나14651	
배관공 남32세	좌반신부전마비, 복합 두뇌기능장애, 정서장애, 성기능장애, 좌안구 운동장애		90%	100%	88.6.16선고 88나3361	
광부 남30세	노기질적 증후군 및 청력장애, 시력장애, 우측 제2, 3수지의 운동장애	4급 1호, 7급 3호, 10급, 6호, 11급 4호	광부 60% 도시일용 노동 45%	광부60% 도시일용노동45%	88.6.16선고 88나4968	

(2) 척추

피해자	후 유 장 애				법원이 인정한비율 노동능력상실정도	사건번호
	내 용	산재등급	맥브라이드표 상실율	상실율		
형틀목공 (경력9년)남35세	척추손상으로 인한 통통 및 운동제한 좌측 하지의 근력악화, 좌측주관절부의 운동제한	6급 4호	목공으로서 32%	50%	88.2.11선고 87나4157	
형틀목공 남28세	제2요추의 진구성 압박골절에 의한 요통	11급 5호	형틀목공 38% 도시일용노동자 22%	형틀목공 38%	88.5.19선고 88나66	
잡부 남 44세	흉요추부위 압통, 척추운동의 극심한 제한, 제12흉주신경 이하 불완전 마비, 요실금, 성기능 마비, 흉문직장기능 마비	1급 3호	도시일용노동자 76% 농촌일용노동자 82%	100%	88.5.19선고 88나64	